

골드바(한국조폐공사)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골드바를 매입/매도하는 고객과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 이라 함)를 대리하여 골드바를 판매/매입하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함)간에 이루어지는 골드바의 매매거래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골드바 매매대행의 개요

- 은행은 조폐공사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골드바를 판매(이하 "판매대행 거래" 이라 함)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골드바를 조폐공사를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이하 "매입대행 거래" 이라 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골드바 판매대행거래 또는 매입대행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조폐공사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3조 골드바 정의 및 종류

- 이 약관에서 '골드바'란 금을 바(Bar) 형태로 주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물형태의 금으로서, 조폐공사에서 순도 99.99% 및 질량을 보장하는 골드바를 말합니다.
- 골드바 판매단위는 37.5g, 100g, 500g, 1kg 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대상고객

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법인, 미성년자 및 대리인 거래불가)에 한하여 골드바의 판매대행 거래 또는 매입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제5조 거래장소

고객은 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제6조 매매대금 정산

고객은 본인이 예금주인 당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통해 골드바 매매대금(고객 매입시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거나 수취합니다.

제7조 매매가격의 결정

- 기준가격의 결정
 - '기준가격'은 국제금시세와 환율에 따라 계산된 1g(그램)당 원화표시 가격이며, 은행은 국제금시세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기준가격을 고시합니다.

$$\text{기준가격(원/g)} = \text{국제금시세 } (\$/\text{oz t}) \div 31.1034768 \text{ (g/oz t)} \times \text{환율(원/\$)}$$

- '기준가격'은 고객의 거래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시점'이란 고객이 작성한 신청서의 내용이 은행 전산단말기에 입력 완료되어 매매가격이 산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 제1호에서 '국제금시세'란 거래시점에 은행이 고시한 1 트로이온스(Troy ounce, oz t) 당 미국 달러화 표시가격을 말합니다.
- 제1호에서 '환율'은 거래시점에 은행이 고시한 US달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② 매매가격의 결정

- 고객이 골드바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매매가격'이라고 합니다.
- 매매가격은 고객이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골드바의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text{고객이 살 때}] \text{ 판매가격(원)} = \text{기준가격(원)} \times \text{골드바중량(g)} \times (1 + \text{판매수수료율})$$

$$[\text{고객이 팔 때}] \text{ 매입가격(원)} = \text{기준가격(원)} \times \text{골드바중량(g)} \times (1 - \text{매입수수료율})$$

- 제2호에서 규정한 판매수수료율과 매입수수료율은 골드바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37.5g	100g	500g	1kg
판매수수료율	6%	5%	5%	4.9%
매입수수료율	5%			

- 고객과의 매매시에 적용되는 최종 판매(매입)가격은 제2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십원 미만 단위는 절사

하여 적용합니다.

5. 제3호의 수수료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부가가치세 납부

① 고객이 골드바를 매입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부가가치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판매가격(고객의 매입가격)} \times 10\%$$

제9조 매매대금지급 방법

①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골드바를 매입하는 경우, 고객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제8조에 따라 정해진 부가가치세를 매입시점에 은행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골드바를 매도하는 경우, 은행은 매매계약체결시점에 제7조에 따라 정해진 매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골드바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당행 계좌로 입금합니다. 단,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매입거절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실물의 인도 및 인수

①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골드바를 매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②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골드바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매도신청서와 함께 골드바를 은행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골드바의 인수도 장소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의 영업점으로 합니다. 단, 제5조에 의하여 매매거래 장소가 변경될 때에는 이에 따릅니다.

제11조 유의사항

① 골드바 실물보유는 국제금시세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골드바의 매매가격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시간 변동되므로 고객이 상담한 시점에 조회한 가격과 직원의 전산조작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골드바 매매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④ 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골드바를 고객으로부터 매입대행하는 경우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은행이 판매대행한 골드바임이 확인되고, 골드바의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이를 매입대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은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골드바, 골드바의 외형이 손상되거나 위·변조가 의심되는 골드바에 대하여는 매입대행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조폐공사가 해산, 폐업, 영업정지, 관련법령의 개폐 등으로 골드바 판매/매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은행과 조폐공사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은행은 골드바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⑥ 은행은 제5항에서 정한 업무 종료 사유 중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골드바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하는 때에는 업무종료일 1개월 전부터 한 달간 아래 각호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1.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

3. 고객이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지

4. 고객과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애플시 등)에 의한 통지

⑦ 제5항에서 정한 업무 종료 사유 중 조폐공사의 해산, 폐업, 영업정지, 관련 법령의 개폐 등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골드바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하는 때에는 은행이 종료사유를 인지하는 즉시 제6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같은 방법으로 고객에게 해당사실을 공지합니다.

⑧ 은행은 전쟁, 천재지변, 전산장애, 정전,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를 일시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고객 요청에 의해 골드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경우, 가격이 확정되어 주문이 완료된 이후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면책사항

① 은행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은행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고객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11조의 제4항, 제5항의 사유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입대행 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고객이 최초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객이 이러한 변경신고를 아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⑤ 고객이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관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개별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과 은행 사이의 거래에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약관 시행일 1 개월 전에 한달 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 ②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 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달 간 고객에게 알립니다.
1.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
 3. 고객이 신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지
 4. 고객과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애플시 등)에 의한 통지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예금자 보호

골드바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 조정

- ① 고객은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